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9. 14.(목) 11:00 < 9. 15.(금) 조간 > 배포 2023. 9. 14.(목)

어린이제품 인증비용 저감을 위한 공장심사비 인하

-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를 국내공장 25만원·해외공장 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
- 인증 관련 시험검사방법 개선, 안전관리 수준조정 등 인증비용저감 지속 추진

산업통상자원부는 9.15.(금)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」을 개정·공포한다.

이에 따라,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신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공장심사비가 국내공장 25만원·해외공장 60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동일하게 20만원으로 인하된다. 또한,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실시되는 공장심사의 경우에도 국내공장 20만원·해외공장 48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모두 15만원으로 인하된다.

대상 품목은 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」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, 어린이 놀이기구,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,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종이며, 개정 시행일인 9월 15일 전에 공장심사 신청 후 심사를 진행 중인 제품들도 인하된 심사 비용을 적용받는다.

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“앞으로도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·검사방법을 효율화하고, 안전인증·안전확인·공급자적합성확인 등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검토하여 조정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제품안전정책국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	책임자	과 장	오재철 (043-870-5450)
		담당자	사무관	조영삼 (043-870-557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어린이제품 안전인증 개요**

□ 제도개요

○ (**규정**)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**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」 시행**('14.6.3. 제정, '15.6.4 시행)

○ (**대상**) **만 13세 이하 어린이**가 사용하는 **모든 어린이제품**

* 약사법, 식품위생법, 화장품법 등 타법에서 소관하는 품목은 제외

○ (**관리체계**) 위해도에 따라 **안전인증, 안전확인, 공급자적합성확인** 품목으로 지정하여 제조(수입)자가 시장출시(통관) 전에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KC 마크를 표시

<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개요 >

구 분	대상 품목	관리방법	위해도
안전인증 (4개 품목)	어린이용 물놀이기구, 어린이 놀이기구,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, 어린이용 비비탄총	제품검사 + 공장심사	높음 ↑
안전확인 (16개 품목)	유아용 섬유제품,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, 유아용 의자, **완구**, 유아용 삼륜차,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, 어린이용 자전거, 학용품, 유모차, 유아용 침대 등	제품검사 (지정 시험·검사기관)	
공급자적합성확인 (14개 품목)	어린이용 가죽제품, 아동용 섬유제품, 어린이용 장신구, 어린이용 안경테, 어린이용 우산·양산,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,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등	제품검사 (사업자 스스로 또는 제3자 시험·검사기관)	낮음 ↓

* 지정외 품목도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안전관리

○ (**절차**) 안전관리 수준에 따른 KC 마크 표시

- (**안전인증**) 제조·수입자가 안전인증기관에서 **안전인증을 받은 후 KC 마크**를 **표시**(2년 단위 정기검사)

- (**안전확인**) 제조·수입자가 시험·검사기관을 통해 **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KC 마크**를 **표시**(유효기간 5년)

- (**공급자적합성확인**) 제조·수입자가 **자체 또는 제3자 시험·검사 기관**에서 **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**한 후 **KC 마크**를 **표시**